

	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	제정일	1997. 6.19
		개정일	2021. 9. 1
		개정차수	5차
		담당부서	입학홍보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신입생 입학전형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, 분석, 검토,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입학전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설치)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한다. (개정 2009. 2.13)

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(학부(과)장, 정보지원센터장, 교양교육센터장 당연직 위원 포함)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11. 1, 2021. 9. 1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이 되고,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21. 4.15)

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.

제 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연구 분석검토 심의 의결한다.

1. 본교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
2. 대학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
3. 대학 입학 적격자, 선발기준 모형 개발
4. 대학 입학전형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(전형유형, 전형자료, 자격기준, 전형방법, 전형일정, 모집인원 배분, 사정방법 등)
5. 대학 입학정보의 개발과 홍보

제 6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7조 (사무관장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21. 4.15)

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입학홍보처 입학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2021. 4.15)

제 8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